

잡지언론의 법리와 헌법판례

권영설

중앙대 법학과 교수

1. 개관

「경신사화」라 부르기 까지 하는 1980년의 언론인의 대량 강제해직, 언론사통폐합, 언론기본법의 제정 등에 대한 국회의 조사활동이 바야흐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물론 이때 지난 8년의 굴절된 언론정책이 겨냥한 주된 대상이 잡지언론이라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문사가 잡지들까지 발행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언론매체구조는 이른바 「권·언 유착」이라는 새로운 낱말을 창출한 바로 이 시기에 그 파행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심화되었기 때문에 1930년대,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이어 지금 폭발적이라 할 「잡지의 홍수」도 그 근원을 이같은 구조적 문제점에 비추어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980년 7월 31일 단 하루에 폐간처분이 이루어진 172개의 잡지는 형식적 통계상으로도 일간신문과 통신사를 뺀 전체 정기간행물 1434개 지의 12%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를 꼼꼼히 살펴볼 때 이들 전체 정기간행물 안에는 대학신문과 기관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실질적으로 보아 상업월간지 293종 가운데 27.3%인 80개 잡지가 당시의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등록취소처분이 내려진 이들 잡지의 대부분이 이 법 제 8조 상의 발행목적위반과 법정발행실적미달을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이제 새삼 논의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공보부는 그 일괄취소의 사유로, ① 각종 비위·부정·부조리 등 사회적 부패요인, ② 음란, 저속, 외설적 내용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에 유해한 내용의 게재, ③ 계급의식의 격화·조장 및 사회불안의 조성 등을 들었었다.

이같이 그럴싸하게 내걸었던 명분들은 짐짓 그 자체로서는 공감 못 할 바도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의 집권군부세력이 진실로 목표하였던 바는 다른 무엇보다도 「뿌리깊은 나무」, 「창작과 비평」 및 「씨알의 소리」 등 일부 진보성향의 잡지들에 대한 폐간이었음은 이제 더이상 비밀이 될 것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잡지들과 다른 한편 실제 문제가 없지도 않았던 일부 저질 퇴폐잡지들을 한데 묶어 동일선상에서 등록을 취소하였던데 있다. 아무튼 굳이 이를 여기서 되새겨 보는 까닭은 잡지의 「무더기폐간」이 8년 뒤 오늘날 「무더기복간」 현상으로, 그리고 그 동안의 지나친 신규등록의 억제와 잡지의 「신간홍수」로 뒤바뀌어 나타나고 있는 바, 터진 붓물이 몰고 오는 잡지의 과잉공급은 필연적으로 잡지언론의 전형적 역기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쟁적 상황에서 상업적으로 존립을 유지하거나 성공하여야 함은 잡지언론의 자유가 남용될 토양 바로 그것임에 주목해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으레껏 기생하기 마련인 것은 악의이건 아니건 의도적이건 아니건 내용의 부정확성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문제가 가장 극명히 노출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지난 12월 7일 국회의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이해찬위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야기된 「월간중앙」 1988년 3월호의

「허위사진 보도」 사건이었다. 바로 여기에서 제기되는 과제가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침해, 음란, 선동 등 잡지사에 의한 언론자유의 남용과 이의 규제일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잡지도 언론매체의 중요한 한 형태이고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으나 일정한 한계의 테두리안으로 조건이 주어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굳이 법리적으로 본다면 잡지언론에만 타당한 권리와 의무의 법체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만 유형적으로 보아 잡지언론에 보편적이라 할 문제의 법령역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마치 신문이나 방송에 관해 활성화되어 온 연구보다 잡지에 관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듯이 바로 이 매체에의 법적 접근 또한 뒤쳐져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바로 이 시점의 우리 잡지언론의 양적 폭발현상에 비추어 다른 나라와 우리의 잡지언론에 관한 판례를 짚어 봄을 통하여 그 자유와 제한의 폭을 가늠해 보고 나아가서 우리 잡지문화의 위상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본다.

2. 잡지언론의 성격

언론매체로서의 잡지는 흔히 신문과 서적의 중간형으로 규정된다. 다시 말해서 잡지는 본질적으로 신문과 비슷한 요소가 많음이 사실이고 바로 그 공시성 때문에 「신문의 변형」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잡지라는 우리말 이름이 그러하듯이 고정된 내용의 잡다한 저술이나 기록을 묶었다는 뜻에서는 「서적의 추록」 내지 「서적의 부록」이라는 성격 또한 갖는다고 하겠다.

아울러서 신문이 대체로 하루 단위의 보도와 논평을 행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속보성과 적시성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내용의 심층성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방송 또한 이와 비슷한 제약성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덧붙여 특히 시간적 보존성의 한계가 두드러진다는 취약성을 나타냄은 물론이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양태가 하루하루 바쁜 일과에 뒤쫓기는 나머지 심층성의 추구는 차치하고서라도 신문보도의 정보량을 뒤따라 가기도 벅차게 되며, 생활의 주단위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다. 바로 여기에 매체수요의 일간화가 주간화 내지 월간화로 변모해 가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까닭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신문이 대체로 다음 날짜 신문의 도래와 더불어 구문화됨에 따라 매체생명이 극히 짧음에 비하여 잡지는 상대적으로 길고 반복성이 높으며 신문에 비할 때 동일본에 대한 구독률에 있어 훨씬 확산성이 크다.

한편 서적은 출판되기 이전 단계에서 내용적 범위를 자유롭게 넓힐 수도 그리고 깊이도 조정할 수 있으나 일단 출간되면 내용의 고정성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개정판일 수 밖에 없는 바, 실제에 있어 이는 크게 실효적이라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서적을 정의할 때 그 한 요소로서 분량을 들기도 한다. 유네스코나 미국 및 프랑스 또는 캐나다의 법적 기준에 따르면 49 페이지 이상을 책으로 분류하며, 40 페이지 혹은 60 페이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 「잡지의 날」이 1908년의 「소년」 창간일에 맞추어져 있듯이 근대적 잡지의 효시인 바로 이 「소년」지도 100 페이지를 넘는 것이었다. 오늘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월간잡지는 물론 주간잡지도 49 페이지는 대개 다 넘고 있어 잡지와 서적에 대한 그같은 구분의 실익은 이미 없다고 하겠다.

아무튼 이렇듯이 신문과 서적의 중간적 매체로서 잡지는 양자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보도의 기능보다는 오락의 기능에 그리고 생산활동보다는 소비생활에 치우쳐지기 쉬운 측면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후자의 측면이야말로 잡지언론의 자유에 있어 남용의 개연성이 커지고 그에 따른 개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됨은 물론이다. 요컨대 잡지도 언론의 한 유형인 한 그 자유의 헌법상 보장이 가질 기능적 중요성과 함께 그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하기 위하여 헌법적 제한과 일반적 법률유보에 따른 제한이 없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잡지언론관계의 주요 헌법판례

(1) 미국의 경우

① 허위의 잡지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Guccione v. Hustler 632 F Supp. 313, 1986)

이 사건의 헌법상 쟁점은 허위기사에 따른 16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 연방헌법 증보 제 1 조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느냐에 있었다. 아울러서 문제의 허위기사내용이 원고로 하여금 기소가능한 범죄를 범했음을 뜻하기 때문에 당연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의 여부 및 원고가 공적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 적용될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가 피고에게 인정되는가의 여부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측의 배심평결불복판결(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신청 및 대안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펜트하우스」와 「허슬러」는 경쟁관계에 있는 성인잡지들이다. 1983년 11월호의 허슬러지가 펜트하우스지 사주인 원고 구치오네씨가 혼인중임에도 동거애인이 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함에 따라 사건이 발단되었다. 배심평결은 명목적 손해배상 1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160만 달러를 피고에 부과하였고 이에 본건이 청구되었던 것이다.

문제된 허위기사는 원고가 혼인 중 타인과 성관계를 맺고 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뉴욕주 형법 제 255 조 제 17 항에 따라 간통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간통이 기소가능한 범죄이긴 하나 실제에 있어 소추되는 사례가 거의없는 결과 명예훼손의 목적으로서는 범죄로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원고 구치오네씨가 특정적 손해배상액(specific damage), 다시 말해서 그가 입은 그의 명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당연적 명예훼손이 구성됨을 밝혔다. 또 원고 구치오네가 다른 주인 오하이오주의 소송에서 공적 인물로 이미 인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는 금반언(estoppel)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실제적 악의의 입증이라는 엄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그 동안의 여러 경멸적 논평과 대규모적인 인신공격의 사실기록에 비추어 그 같은 악의의 성립 또한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근거와 금액의 과다성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그 자체가 피고의 응징, 재범의 억제,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효과 등을 목표로 한 것인 만큼 실제로 입은 손해에 비례적으로 연동될 성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재산정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결코 과다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연방헌법 위반의 문제는 발견될 수 없고 피고측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② 이혼소송 당사자에 대한 보도만으로는 공적인물이 되진 않으나 외연적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건 (Time, Inc. v. Firestone 424 U.S 448., 96 5. Ct. 958, 1976)

이 사건에서는 이보다 2년전의 「거츠」 판결(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945. Ct. 2997) 에서 다양하고 상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는 공적 인물의 법리가 새롭게 조명되었으며, 대안적으로 설사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기사내용에 따라 본인에게 모욕과 수치심 그리고 타인에 의한 평결의 절하가 초래되고 본인에 의한 특정한 피해의 입증이 어려운 이른바 외연적 명예훼손(libel per quod)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마이애미 팜비치의 타이어 재벌 럽셀 파이어스톤과 이혼소송중인 그의 부인 매어리앨리스 파이어스톤이었다. 문제된 잡지는 라이프(Life)지였으나 타임지사 법인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타임사가 되었었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서로 상대방의 부정을 그 사유로 했음과 더불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용한 잭 하우드(Jack Harwood)라는 사설탐정의 활동 때문에 멜로드라마적 소재가 되었고 급기야 타임 -라이프지에 기사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파이어스톤 부인은 이혼소송중인 자신의 명예가 그 잡지기사로써 손상되었고 본안 소송에서 불리한 결정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외연적 명예훼손의 소송을 타임사에 제기하였는바 원심판결에서 패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승소하였을 뿐 아니라 환송된 재판에서 타임사는 파이어스톤 부인에게 10 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 판결이유는 만일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속에서 받고 있는 기대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비록 미움을 받지 않을런지 몰라도 모욕과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며 바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여성의 경우는 그 같은 가능성이 현격히 높다고 적시하였던 것이다. 타임사는 원고가 이미 공적 인물이고 실제적 악의 또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렌퀴스트」 (William Rehnquist)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연방대법원은 타임사의 상고가 이유 없음을 판시하면서 이 경우 원고는 결코 공적 인물이 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내용이 공표되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어려운 문제는 공적 인물과 사적 인물의 구별이 아닐 수 없다……이들 부부에 관한 기사는 독자들에게 흥미를 줄지는 몰라도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혼사건은 (공적 인물)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 ……라이프지에 게재된 파이어스톤 부인의 기사는 그녀를 공적 인물로서 보다는 사적 인물로서 보도한 것이다. 더구나 (사적인 이혼소송)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공공적인 광장에서 발표되었다는 이유만으로써 공적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사법절차를 남용함이 허용되지 않듯이 사법절차를 밟는 결과

불이익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공적 인물로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고, 폭넓은 명예훼손의 인정을 통하여 잡지언론의 자유에 대한 엄격해석이 강화된 셈이다.

(2) 서독의 경우

① 재판심리 중 및 시사성이 있을 때 피고인 신원의 보도는 허용되나 법원판결 이후는 인격권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사건(15U 38/86, Köln Archiv Für Presserecht IV Q., Verlagsgruppe Handelsblatt, 1986).

잡지기사에 묘사를 통하여 범인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때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한 보도와 당사자 인격권의 보호를 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잡지기사가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편집총괄책임자와 부분편집자 사이에 민사책임상의 차이가 있는가 등이 이 판례의 주된 쟁점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강간범으로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 바 그 판결일로부터 7개월 뒤, 「X 화보」 잡지는 바로 그 강간의 피해자인 여자의 폭행상황과 가해자의 신원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기사화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의 인격권침해를 주장하면서 당해 잡지사와 책임있다고 여겨지는 편집인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원심법원은 위 3인 모두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편집총괄책임자인 M의 항소이유는 인정되었으나 기타 항소인의 경우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비록 진실한 보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까닭없이 피해자의 잘못이나 결점을 폭로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중대한 형사범죄에 관한 시사성있는 보도는 허용된다고 그 예외성을 인정하였으며 그 근거로서 법원은 일반대중의 알 권리가 이 경우 더 중요할 뿐 아니라 그 피해자 스스로가 자기에 관한 것이 문제로 되게끔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였다고 풀이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판결이 있는 지 이미 7개월이 지났고, 또 원고가 구속된 상태에서 그의 형기의 상당부분을 복역함을 통하여 그 시사성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았을 뿐 더러 법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강간의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을 당한다는 이유만으로써 시사성이 계속 존재한다고 봄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요컨대 문제의 이 잡지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이며 이는 형의 집행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그를 괴롭힐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서독언론헌장(Pressekodex) 제 28 조 2항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들의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적시되었다.

결국 원고가 입은 인격권의 피해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리 보상될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아울러서 원심법원의 손해배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② 잡지사 또는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 개인의 편지를 동의없이 공표함에는 인간존엄권 및 인격권 보호의 가치가 언론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사건(501824/86, Oldenburg 징계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제 3의 정당인의 편지를, 공표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잡지사

발행인이 적시성도 없는 사적인 실수의 내용으로써 반복하여 게재함은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는가가 이 사건의 주된 법적 쟁점이 된다.

원고는 서독 모시의 시장으로서 주의회선거에 후보자로 선거운동중인 바, 같은 정당소속의 정치인 S 씨가 지구당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한 징계절차개시요구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월간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단순하게 문제의 이 편지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 각주를 통하여 그 자신의 입장까지 밝힘으로써 이른바 「정신적 공표자」가 된 셈이다. 여기서 논란이 된 원고의 모친구타사건 진위를 둘러싸고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원고의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졌고 문제의 편지게재는 금지되었으며 이어서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여기서 비중립적인 피고의 행위가 정신적 공표자로서 서독 민법 제 1004 조 상의 침해자를 구성케 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에 의한 친모 구타는 그 사실 여부조차 이 경우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설사 그 주장이 진실이라 할 지라도 이 사건의 피고는 이를 공표할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진실인 경우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사적 영역을 침해함을 통하여 그의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를 구성하였을 것이라는 논리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이 판결문은 일반적 인격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는 바 그것이 서독민법 제 823 조 제 1 항 상 의미의 「기타의 권리」로 인정되며, 「본」기본법 제 1 조의 인간존엄, 그리고 제 2 조에 규정된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꾀할 권리 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BverfG 35, S. 202 NJW 1973, S. 1226)

물론 원고의 사생활비밀보호가 무제한적 및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본」기본법 제 5 조 언론의 자유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 인간존엄 ·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권 · 언론의 자유 등 경합된다고 짐짓 보여지는 이들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하게 됨은 물론이라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 법원은 언론의 자유가 앞의 두 기본권에 결코 우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에 주목해야 하겠다.

(3) 한국의 경우

① 성명으로 특정되지 않았어도 독자가 피해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면 정정보도청구는 인정됨(서민판 1982. 9. 3, 82 카 18633).

이 판결은 1987년 11월 폐지된 언론기본법의 시행 이후 그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사건에 관한 첫번째의 사례로서 주목을 끌었던 바 있다. 요컨대 허위의 사실을 과장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 그 피해자의 성명이 특정되는 대신 성씨만 보도되었으나 일반 독자로서도 식별가능한 경우 정정보도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가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그 청구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판결의 송달 직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간경향 잡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판결하였다.

여기서 피신청인이 보도한 잡지기사는 「……광주시 북구 건축과 박모씨……」로 그 성명의 완전 특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신원이 쉽게 식별되며 그 내용 또한 「……6개월 전부터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는 여관으로 직행해서 도박판을 벌이기에

정신이 팔렸던 공무원들, 그것만으로 모자랐던지 심지어는 부하 여직원을 여관으로 불러들여 탈선애정행각까지 일삼다가……」로 보도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몇 가지 점에서 이 판결은 잡지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등 진보적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돋보인다고 하겠다. 먼저 신청인의 실제 성명의 「임」형신임에 비하여 보도된 문제의 성씨가 「박」모씨 였었다는 점이다. 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을 포함한 광주시 공무원 8명이 도박사건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 신청인의 공무원징계관계문서에도 이점이 나타나 있으며 특정일 이틀에 걸쳐 여관에서 화투놀이를 한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습적 도박행위와 부하 여직원과의 불륜관계사실만은 그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표본적이라 할 우리나라 주간잡지의 인권침해보도에서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판결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될 만하다. 다만 이 판결은 정정보도의 인정에 국한되고 있어 실효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하겠다.

4. 결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송법」과 더불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그 동안 말썽 많아 온 언론기본법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되었던 독소조항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하였다. 잡지의 등록취소를 행정청 대신 법원의 재판에 의하도록 한 점이나(제 12 조), 잡지등록에 있어 등록증의 교부를 지체없이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제 7 조 제 3 항)만 하여도 그나마 진일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솔하게 남아 있음이 분명하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난날 잡지의 「무더기폐간」은 반동적으로 「무더기 복간」과 「무더기 신간」을 결과하여 실로 지금이야말로 잡지의 춘추전국시대라 일컬을 만 하다. 이는 곧 잡지언론의 가장 표본적 역기능을 잉태하고 있음을 뜻하며 최근 광주특위의 한 사건도 결코 이와 크게 무관하지 않으며 또 다른 객관적 착오이든 주관적 착오이든 문제성을 예고해 준다고 하겠다.

몇몇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짐짓 공적인물법리의 요건이 충족될 만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인권우선적인 미국의 법리나 인격권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서독의 법리전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은 절실한 요청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및 당장 앞으로 예견되는 우리 잡지언론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실로 그 같은 요청은 더욱 더 절실하리라 믿어진다.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마셜 및 플렛처 법 · 외교대학원 수료

□ 튀빙겐대학교 훔볼트 연구교수

□ 저서: 「역차별의 헌법문제」, 「배심제도의 현대적 변용」,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기업규제」,

「유럽공동체 헌법론 서설」 외

□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과교수